

◎기상청공고 제2023-63호

「기상측기 형식승인·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·사후관리」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'행정절차법'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05월 11일

기상청장

「기상측기 형식승인·검정 대행기관 지정 요건 및 형식승인대행기관 지정 방법·사후관리」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부서의 명칭을 '예보', '관측', '기후'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소관업무의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」 이 개정됨에 따른 국립기상과학원 부서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현업운영개발부장을 관측연구부장으로 부서명칭 변경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(참조: 계측표준협력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: (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,
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
- 전자우편: namsuk@korea.kr
- 팩스: 042-489-6026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계측표준협력과(전화: 042-481-735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s://opinion.lawmaking.go.kr>)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(<https://www.kma.go.kr>)의 「주요업무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」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